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57
----------	------

제출연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 제고
- 나. 장기재직휴가와 학습휴가 확대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조문 정비
 - 재해구호휴가 신설에 따라 중복 조항 삭제 (안 제14조의2제7항)
 -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확대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별표 정비 (안 제14조의3 및 [별표4])
 -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제도 신설 반영 (안 제14조의4)
- 나. 관련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4조의2제5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폐지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법령 사항 변경
- 다.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 확대 (안 제14조의2제6항)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부여
- 라. 특별휴가(학습휴가) 확대 (안 제14조의2제9항)
 - 학습휴가 일수 확대 (4일→5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8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7조, 제7조의7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31709호, 2021. 6. 1., 타법폐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89호, 2022. 10. 18., 타법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의 : 감사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지방공무원 노조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2) 입법예고(2023. 8. 10. ~ 8. 30.) : 의견 없음(별첨 3)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별첨 4)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출 제외 통보 확인(별첨 5)
- 6) 학생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별첨 6)
- 7) 지방공무원 노조 의견 : 의견 없음(별첨 7)
- 8) 관계법규 : 별첨 8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0년”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5일, 10년”으로, “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4일”을 “5일”로 한다.

제14조의3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즉, 호봉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9년 6월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한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기한을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4조의2(특별휴가) ① (생략) ② ~ ④ 삭제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u>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u>」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u>10년 이상 18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10일, 18년 이상 25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15일, 25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휴가</u>를 허가할 수 있다. ⑦ <u>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u> 공무원은 <u>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u>를 얻을 수 있다. ⑧ (생략) ⑨ 공무원은 「<u>평생교육법</u>」 제8조에 따라 연간 <u>4일</u>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생략)</p>	<p>제14조의2(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u>」----- ----- ----- ----- ----- ----- ----- ----- <u>장기재직휴가</u>----- <삭제> ⑧ (현행과 같음) ⑨ ----- ----- <u>5일</u> ----- ----- ----- ⑩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4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p> <p><신설></p>	<p>제14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 ----- 5년 ----- ----- ----- -----.</p> <p>제14조의4(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p>
<p>[별표 4] <신설 2017.7.13.></p> <p>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제14조의3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즉, 호봉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p> <p>2 민간 경력별 연가 가산 일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p>※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p> </div>	<p>[별표 4]</p> <p>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제14조의3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즉, 호봉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p> <p>2 삭제</p> </div>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해당 없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주무관 이재성(02-3999-239)

【별첨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의견 없음”	

【별첨 4】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장학사	천주영
입안주무부서	총무과	통보일	2023. 8. 2.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안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동 개정(안)은 상위법을 반영한 조문 정비와 특별휴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함 - 따라서, 동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 및 조직문화 개선이 목적이므로 부패 유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원안동의”

【별첨 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3A서울교육020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총무과		
	담당자명	이재성	전화번호	02-399-9239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담당자명	홍정미	전화번호	02-399-9675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3년 07월 31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3년 08월 01일			
<p>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2023년 08월 01일</p>				

【별첨 6】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자	직급	주무관	성명	이재성 (02-399-9239)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위원장 마한얼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제14조의2 제5항, 제6항, 제7항, 제9항 제14조의3 제14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제)정 사항(재난구호휴가 규정 신설)을 반영하여 기존 구호휴가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장기재직휴가 대상자를 확대하고, 시간외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력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규정됨 - 이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원안동의

【별첨 7】

지방공무원 노조 의견 처리 결과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검토결과
	“의견 없음”		

【별첨 8】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639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2023. 7. 18.>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1. 11. 30.>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709호, 2021. 6. 1., 타법폐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89호, 2022. 10. 18., 타법개정]